

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

관세법 제2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,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1. .

관 세 청 장

대상법령	대상 수출입자
전파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전기용품안전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유해화학물질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방위사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

끝.